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방분권 여건성숙에 따라 서울시·자치구 간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 등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54조)
- 나. 市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시 자치구청장의 발언권을 위원장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 보장(안 제59조)
- 다.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자치구 결정권한 확대, 입체·복합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정 마련 및 현행 규정과 여건에 맞지 않는 위임기준 재정비(안 별표4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 (2018. 8. 9. ~ 8. 29.) 결과: 의견있음(별도 첨부)

(3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13항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제59조제2항 중 “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도시계획위원회”를 “시도시계획위원회”로 한다.

별표 4 중 사무명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(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,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,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)

같은 호 사목 중 “(동사무소, 파출소, 우체국 등 지역단위 청사에 한함)”을 “(동사무소, 파출소, 소방파출소, 우체분국, 보건지소로 한정함)”으로 하고,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자. 문화시설(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하되, 전시 시설,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)

같은 호 타목 중 “(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)”을 “(가스배관시설로 한정함)”으로 하며, 더목과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더. 공원(어린이공원, 소공원으로 한정하되, 면적의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)

러. 시장(市場). 다만,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.

같은 표 사무명란 제5호 중 “제2호에 따른 지형도면”을 “지형도면”으로, “사무”를 “사무(다만, 시장이 결정 또는 변경결정한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4조 (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) ① ~ ⑫ (생략)</p> <p>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.</p>	<p>제54조 (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) ① ~ ⑫ (현행과 같음)</p> <p>⑬ ----- ----<u>제6항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9조(자료제출 및 제안설명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당해 자치구의 도시계획관련 사항에 관하여 <u>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</u>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59조(자료제출 및 제안설명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<u>시</u> <u>도시계획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[별표 4] 권한위임 사무 (제68조 관련)</p>	<p>[별표 4] 권한위임 사무 (제68조 관련)</p>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<p>서초구청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차장, 체육시설, 공공청사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결정권한 전부 위임 ○ 자치구로 배분된 상업지역 물량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권한 위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정규모 이상 또는 지역단위를 초과하는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광역적·종합적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하며, -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 전체의 중심지체계와 지역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, 특히 신규 상업지역 지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가능토록 서울시 차원의 검토 필요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동 조례개정안은 지방분권 여건성숙에 따라 서울시·자치구 간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비용발생 여지가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-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동 조례개정안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자치구 결정권한 확대, 입체·복합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정 마련 및 현행 규정과 여건에 맞지 않는 위임기준 재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비용추계 작성대상의 예외에 해당함

4. 작성자

부서명 : 도시계획과 성명 : 정성훈 (2133-8324)